

# 2020수소모빌리티+쇼 참가신청서

## 참가업체

회사명 (단체/협회/기관)	국문			대표자	
	영문				
주 소					
담당자	성 명		직 위		
	부 서		전 화		
	휴대전화		팩 스		
	이메일		홈페이지		
전시품목					

## 전시면적 신청 및 참가비

### ■ 전시관

(부가세 별도)

구 분	참가비 단가	전시신청 면적	참가비 총액
독립식 부스	2,500,000원/부스	부스	
조립식 부스	3,000,000원//부스	부스	

주) 1부스 = 3m×3m

## 참고사항

■ 참가비 지정은행 계좌 : 신한은행 100-024-396374(SHBK1RSE),  
예금주(한국자동차산업협회)

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참가비 납부시 부가세 10% 제외한 금액을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

■ 문 의(수소모빌리티조직위원회)

○ 한국자동차산업협회 (전화: 02-3660-1892, 팩스: 02-3660-1901)

2020수소모빌리티+쇼 참가업체 모집공고(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19-1호)와 참가관리 규정(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19-1호)을 준수하고, 양 규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하며,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월 일

회 사 명 (단체/협회/기관)		대표자명	서명
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	----

## 2020수소모빌리티+쇼 참가관리 규정

### 제1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“모빌리티쇼”라 함은 2020수소모빌리티+쇼를 말한다.
- ② “참가업체”라 함은 본 모빌리티쇼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를 납부하고, 모빌리티쇼 전시기간 동안 전시규정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하는 업체(기관 및 단체 포함)를 말한다.
- ③ “주최자”라 함은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에 소재하고 있는 수소모빌리티+쇼조직위원회”를 말한다.

### 제2조 (참가신청)

- ① 참가신청서류는 수소모빌리티+쇼 홈페이지([www.h2mobility.kr](http://www.h2mobility.kr))를 통해 신청한다.
- ② 주최자와 다수 기업의 모빌리티쇼 참가 유치에 관한 공식협약을 체결한 협회 또는 기관(단체)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나 기관(단체)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참가신청서 제출시 제3조에 따라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### 제3조 (참가비 납부조건)

- ① 참가비는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참가신청금(참가비의 50%)을 신청 마감일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우선 납부하고 잔금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신청마감일인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참가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참가업체는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% 완납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 (전시위치와 면적 배정)

- ①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전시면적 규모 순, 동일 면적시 참가신청(참가비의 50% 이상 납부) 일자순으로 전시위치와 면적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주최자가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배정된 전시위치와 면적을 재조정할 수 있다.
- ② 주최자가 모빌리티쇼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한 참가업체는 위치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
- ③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업체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- ④ 참가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다.

**제5조 (모빌리티쇼의 취소 및 변경)**

- ① 주최자가 천재지변, 정부의 요청,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모빌리티쇼를 취소 또는 변경,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업체에 발생된 손실(참가비,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)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.
- ②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빌리티쇼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 귀책사유로 모빌리티쇼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업체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
**제6조 (참가업체의 참가해지·취소 및 위약금)**

- ①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본 참가업체 모집공고(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19-1호) 및 참가관리 규정(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19-1호)을 위반할 경우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참가업체가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아래표에 따른 해약금을 차감하여 이자없이 환불한다.

해 지 시 기	해 약 금
2019. 9. 1 - 2019. 12. 31	전체참가비의 30%
2020. 1. 1 - 2020. 1. 31	전체참가비의 50%
2020. 2. 1 - 2020. 2. 28	전체참가비의 80%
2020. 3. 1 - 2020. 3. 17	전체참가비의 100%

- ② 참가업체가 2020년 1월 31일까지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 신청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참가업체가 전시참가를 취소하거나 전시배정 면적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해야 하며, 주최

자는 참가비에서 아래표에 따른 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없이 환불한다.

취 소 시 기	위 약 금
2019. 9. 1 - 2019. 12. 31	기준액의 30%
2020. 1. 1 - 2020. 1. 31	기준액의 50%
2020. 2. 1 - 2020. 2. 28	기준액의 80%
2020. 3. 1 - 2020. 3. 17	기준액의 100%

※ 기준액=(취소면적/배정면적)×전체참가비

※ 배정면적은 전시면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시 신청면적으로 본다.

- ④ 제3항의 취소시점은 참가업체의 사용취소 요청 공문서 도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
### 제7조 (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)

- ① 참가업체는 “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”과 주최자가 정한 “모빌리티쇼 관리지침” 및 “모빌리티쇼 전시지침”에 따라 자사 부스를 설치, 관리, 운영하여야 하며,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,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③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한 손상, 도난,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④ 참가업체는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.
- ⑤ 참가업체가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에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업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⑥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⑦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품목,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### 제8조 (보험부보)

- ① 주최자는 전시기간중 전시장내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인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부스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모빌리티쇼 전 기간

동안 자사 부스에서 관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9조 (보충규정)

- ① 킨텍스 “전시장 운영요령”과 “모빌리티쇼 관리지침” 및 “모빌리티쇼 전시지침”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, 참가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10조 (분쟁해결) 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,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,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